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4. 5. 8.(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불참위원 : 없음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홍일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 중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21차, 제22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전>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전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 김홍일 위원장
 - <보고안전 가> “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정은 위치정보정책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고시 제정(안)의 내용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제정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입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을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고, 승인신청기관 등 주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고시 내 주요 용어 정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 신청방법입니다. 연계정보 일괄변환과 관련,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항목을 정하고, 승인신청기관의 서류 작성을 돕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류 항목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목차입니다. 서류항목으로는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영 제9조의10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 또는 규약,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를 규정하였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목차로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 승인신청기관에 관한 기본사항과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 및 안정성 확보 조치 등의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관한 세부 내용은 <붙임>의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입니다. 승인 신청 접수에 따른 승인심사 계획 수립, 서류의 보정 등 심사 절차의 세부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절차별 세부내용입니다. 승인 심사 계획 수립 시 포함 항목으로 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나머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 기준입니다.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등 5가지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입니다.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으로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일괄변환의 필요성,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규정하고,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연계정보 처리 절차의 적절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붙임>의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통보입니다. 심사방법으로 서류심사 원칙과 모든 항목에 '적합' 판정 시 승인하도록 정하고 9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구체화 하였습니다.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의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입니다. 유관 경력 보유 또는 전문자격을 갖춘 10인 이내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자격요건은 아래 별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입니다.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관련 항목별 세부 조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 보호조치 세부내용입니다.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사항으로 연계정보 생성·처리를 위한 연계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계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계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연계정보 취급·관리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호조치 관련 세부 내용은 <붙임>의 [별표 3], [별표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밀엄수 의무입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시행일입니다. 시행일은 상위 법령 시행일인 '24년 7월 24일로 하되,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사항 중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와 연계정보 수집자료의 기록·보관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수반 등을 고려하여 시행 예정일을 '26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 이후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위원회 의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계정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윤정은 위치정보정책팀장**

- 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나 마이데이터 등 서비스가 연계정보 일괄변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규제특례를 통해 제공되어 왔습니다. 지난 1월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연계정보 일괄변환 관련 법적 근거가 규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아까 보고에서 시행예정일을 2년 뒤인 2026년 7월 1일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도가 시행되면 초기에 사업자들 간에 여러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해서 시행 예정일도 2년 뒤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혼란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윤정은 위치정보정책팀장**

- 저희가 사업자 설명회나 법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를 실시하고 실태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연계정보 관련해서는 활용 못지않게 보호 필요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안전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윤정은 위치정보정책팀장**

-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한 후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시제정안은 연계정보의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승인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 편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지금 보고를 들어보면 이번 고시제정안은 연계정보 기반의 혁신서비스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업계의 부담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사무처는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접수되었습니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 김홍일 위원장

- <보고안건 나>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 <보고안건 나>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 개정 이유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전승낙제도를 개선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24년 3월 13일 국조실의 사전규제심사를 통해 비규제로 협의되었고, '24년 3월 25일~4월 2일까지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협회 의견수렴을 하였고, 4월 12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 개정 내용입니다. 법제처 의견에 따라 이통사업자와 대리점 등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현행 시행령 체계를 고려하여 사전승낙 위반행위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문 신설 및 변경에 따른 목 신설 및 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 등과 거래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령 [별표 3] 차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령 [별표 3] 카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판매점의 계약체결 등 영업행위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령 [별표 3]의 타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사전승낙서를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하여 시행령 [별표 3]의 파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 신설에 따른 기존 목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하목~어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5월~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고, 6월 중에는 위원회 의결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사무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승낙 관련해서 이번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다면 사전승낙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구조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 전반의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판매점 사전승낙제도를 개선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 시 현행 시행령인 과태료 부과체계와의 일관성·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하고, 사무처에서 향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시행령 개정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 이상인 부위원장

- 예.

○ 김홍일 위원장

- 접수되었습니다.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 김홍일 위원장

- <보고안건 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입니다.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업시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여 사전승낙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24년 2월 5일부터 2월 23일 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3월 14일 국조실의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규제로 협의되었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이통사 및 알뜰폰사업자협회 의견을 수렴하였고, 4월 12일에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 고시제정 주요 내용입니다.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글에 사전승낙서를 게시할 경우 사전승낙서 사본, 사전승낙서 인증마크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게시하도록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게시글에서 이용자가 사전승낙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NS, 쇼핑몰 등 판매유형에 따른 게시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입니다. 5월~6월까지의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7월까지의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사무처에 질문드립니다. 이번 고시가 제정되면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도 사전승낙서를 통해서 특정 판매점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과장 또는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시제정안 역시 판매점 사전승낙제도를 개선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온라인 사전승낙서 게시 의무기준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사무처에서는 향후 행정예고 등 고시제정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이 안건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안건 “나”와 “다”는 판매점의 사전승낙제도를 개선해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개정을 통해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제반 후속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김홍일 위원장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1분 폐회 】